#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의 안 번 호 | 2427 |
|---|---|

2021년 6월 18일
교 육 위 원 회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웅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체제 개편 내용과 개정된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다자녀 가정 등에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

○ 5·18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동등한 예우를 함

## 2. 주요내용

### 가. 정기주차 적용 범위 확대(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나. 급지 개정(5개 급지 → 3개 급지)

○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 →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서울특별시 급지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

○ (신설)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

### 다. 감면 규정 폐지(승용차요일제)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면 혜택이 종료

### 라. 감면 규정 신설

○ 의상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감면 규정 신설(8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50% 감면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8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

여 동등하게 예우함

○ 참전유공자·병역명문가 감면 규정 신설(50% 감면)

**마. 감면 규정 정비**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의 30% 감면에서,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로 개정

○ 5·18민주유공자 감면 규정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동등한 예우를 함

**바. 관련 법령 조항 상세 명시 및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법령의 명확화)**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27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체제 개편 내용과 개정된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부설주차장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정기주차 적용 범위를 현행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 급지체계가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주차장 요금 산정에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와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급지변경 및 사용료에 공시지가 변수 적용(조례안 [별표])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1] 기존 지역별, 기능별로 구분한 5급지 체계를 지하철역

---

1)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 구 분 | 노 상 주 차 장 | | 노 외 주 차 장 | | |
|---|---|---|---|---|---|
| | 1회 주차시 (5분당) |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 1회 주차시 (5분당) | 월 정 기 권 | |
| | | | | 전 일 | 야 간 |
| 1급지 | 500 | 5,000 | 400 | 250,000 | 100,000 |
| 2급지 | 250 | 4,000 | 250 | 180,000 | 60,000 |
| 3급지 | 150 | 3,000 | 150 | 100,000 | 40,000 |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

**반경을 기준으로 한 3급지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료 산정 기본식으로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으로 한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차장 급지와 관련해서 3급지 체계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지하철역 중심의 급지체계를 조성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만들려는 것으로[2] 이를 반영할 경우 교육청의 부설주차장 급지는 [표1]와 같이 변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이용 시 다소간의 요금 등락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주차장 사용료 변경에 대한 공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 급지 변경에 따른 요금**

| 연번 | 기관명 | 급지 | | 주차요금(5분당) | | | 개별공시지가 | |
|---|---|---|---|---|---|---|---|---|
| | | 개정 전 | 개정 후 | 급지 요금 | 공시지가 변수 | 주차요금 (예상) | 법정동 | 공시지가(원) |
| 1 | 서울특별시교육청 | 1 | 2 | 250 | 1.0 | 250 | 신문로2가 | 7,189,683 |
| 2 | 과학전시관 | 3 | 3 | 150 | 0.9 | 135 | 봉천동 | 9,146,049 |
| 3 | 교육연구정보원 | 3 | 3 | 150 | 1.1 | 165 | 회현동1가 | 3,477,480 |
| 4 | 교육연수원 | 3 | 3 | 150 | 1.0 | 150 | 방배동 | 6,196,960 |
| 5 | 유아교육진흥원 | 면제 | 면제 | 250 | 0.8 | 200 | 사직동 | 3,217,173 |
| 6 | 학생체육관 | 2 | 1 | 400 | 1.0 | 400 | 잠실동 | 7,513,597 |
| 7 | 고덕평생학습관 | 3 | 3 | 150 | 0.7 | 105 | 고덕동 | 1,914,359 |
| 8 | 노원평생학습관 | 2 | 2 | 250 | 0.7 | 175 | 중계동 | 1,999,378 |
| 9 | 마포평생학습관 | 2 | 2 | 250 | 1.1 | 275 | 서교동 | 8,489,266 |
| 10 | 영등포평생학습관 | 3 | 3 | 150 | 0.8 | 120 | 당산동 | 2,395,045 |
| 11 | 강동도서관 | 3 | 3 | 150 | 0.9 | 135 | 길동 | 4,224,173 |
| 12 | 강서도서관 | 5 | 3 | 150 | 0.9 | 135 | 등촌동 | 3,539,462 |
| 13 | 강남도서관 | 1 | 3 | 150 | 1.2 | 180 | 삼성동 | 12,526,180 |
| 14 | 개포도서관 | 3 | 3 | 150 | 0.9 | 135 | 개포동 | 4,343,052 |
| 15 | 고척도서관 | 면제 | 면제 | 150 | 0.8 | 120 | 고척동 | 2,560,039 |
| 16 | 구로도서관 | 3 | 3 | 150 | 0.8 | 120 | 구로동 | 2,860,289 |
| 17 | 남산도서관 | 2 | 3 | 150 | 0.9 | 135 | 후암동 | 4,159,443 |
| 18 | 도봉도서관 | 2 | 3 | 150 | 0.8 | 120 | 쌍문동 | 2,037,909 |

2) 구체적인 급지 개정 내용은 [붙임] 참고

| 연번 | 기관명 | 급지 | | 주차요금(5분당) | | | 개별공시지가 | |
|---|---|---|---|---|---|---|---|---|
| | | 개정 전 | 개정 후 | 급지 요금 | 공시지가 변수 | 주차요금 (예상) | 법정동 | 공시지가(원) |
| 19 | 동작도서관 | 2 | 1 | 400 | 0.9 | 360 | 노량진동 | 4,707,597 |
| 20 | 서대문도서관 | 3 | 3 | 150 | 0.8 | 120 | 연희동 | 2,488,347 |
| 21 | 송파도서관 | 1 | 2 | 250 | 0.9 | 225 | 오금동 | 4,862,681 |
| 22 | 양천도서관 | 3 | 3 | 150 | 0.9 | 135 | 목동 | 3,556,436 |
| 23 | 어린이도서관 | 3 | 2 | 250 | 0.8 | 200 | 사직동 | 3,217,173 |
| 24 | 용산도서관 | 2 | 3 | 150 | 0.9 | 135 | 후암동 | 4,159,443 |
| 25 | 정독도서관 | 3 | 2 | 250 | 1.0 | 250 | 화동 | 5,671,285 |
| 26 | 동부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150 | 0.8 | 120 | 전농동 | 3,172,748 |
| 27 | 서부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400 | 1.1 | 440 | 대현동 | 10,468,474 |
| 28 | 남부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400 | 0.9 | 360 | 문래동3가 | 4,213,858 |
| 29 | 북부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400 | 0.8 | 320 | 창동 | 2,493,359 |
| 30 | 중부교육지원청 | 1 | 1 | 400 | 1.0 | 400 | 효제동 | 7,108,055 |
| 31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150 | 1.0 | 150 | 잠실동 | 7,513,597 |
| 32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150 | 0.8 | 120 | 신월동 | 2,474,981 |
| 33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1 | 3 | 150 | 1.2 | 180 | 삼성동 | 12,526,180 |
| 34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250 | 0.8 | 200 | 상도동 | 3,127,907 |
| 35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2 | 2 | 250 | 0.9 | 225 | 행당동 | 3,759,154 |
| 36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면제 | 면제 | 250 | 0.8 | 200 | 미아동 | 2,686,237 |

※ 주차 요금은 해당 급지 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개별 기관의 실정에 따라 면제 또는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평균공시지가 6,439,284원)

○ **다음으로 주차장 사용료의 공시지가 변수 적용과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공시지가' 를 반영하려는 것은 부설주차장의 급지기준이 환승역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지역별 요금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바,[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에 대한 요금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지가 변수' 를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극단적 차이가 급격한 요금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 형평성을 요금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도 금번 개정조례안에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급지 변**

3)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6.12) : 각 행정동별 지가 변수 산출

경에 따라 동일한 사용료 산정식을 도입하였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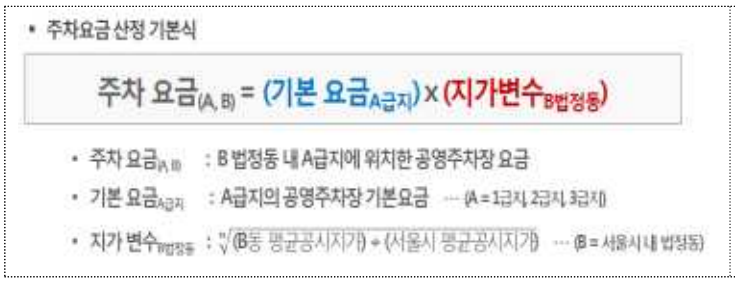


<공시지가 변수>
- **정의** :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 한 것
- **적용기간** : 매년 변동되는 공시자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5년 단위로 주차요금 산정**

2)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확대(조례안 [별표] 〈비고〉 6.)

○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 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행정동 | | 평균 | 지가변수 |
|---|---|---|---|
| 서울시 전체 | | ₩ 2,964,906 | 1.00 |
| 상위 5개 행정동 | 명동2가 | ₩ 37,989,452 | 12.81 |
| | 충무로1가 | ₩ 33,332,368 | 11.24 |
| | 명동1가 | ₩ 29,520,068 | 9.96 |
| | 종로2가 | ₩ 27,178,445 | 9.17 |
| | 충무로2가 | ₩ 22,047,804 | 7.44 |
| 하위 5개 행정동 | 개화동 | ₩ 328,119 | 0.11 |
| | 양평동 | ₩ 295,000 | 0.10 |
| | 오쇠동 | ₩ 215,723 | 0.07 |
| | 과해동 | ₩ 181,415 | 0.06 |
| | 오곡동 | ₩ 167,184 | 0.06 |

## [표2] 서울특별시 대비 감면율 상향 조정 대상자

| 감면규정 | 교육청 개정 감면비율 | 서울시 감면비율 | 자치구 | | | | |
|---|---|---|---|---|---|---|---|
| | | | 강남 | 서초 | 마포 부설 | 종로 | 도봉 |
| 5·18민주유공자 | 80% | 50%(1시간 면제) | **80** | **80** | **80** | 50 | 50 |
| 보훈보상대상자 | 80% | 50% | 50 | 없음 | **80** | 없음 | 없음 |
| 참전유공자 | 50% | 20%(신설) | **80** | **80** | **80** | 없음 | 없음 |
| 병역명문가 | 50% | 20%(신설) | 없음 | 20 | 없음 | **50** | **50** |

○ 이 중 시울특별시와 대비하여 감면율이 상향되어 반영된 대상자는 [표 2]와 같은바, 이는 다른 감면 대상자 및 동 대상자의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감면율 등을 비교하여 동 대상자에게 그에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4)]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토론요지 :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4) ①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도서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차별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례 등을 반영하여, 5·18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감면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80%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됨 → 5·18민주유공자 80% 감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부설주차장)

② 참전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감면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대부분이 중복되며 병역명문가는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한 예우 규정인 점 등을 반영하여 50%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한 것임.

→ 참전유공자 80% 감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부설주차장)

→ 병역명문가 50% 감면: 종로구, 도봉구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9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하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4급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 5급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30% 범위 안”을 “30% 범위”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27조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을 “상이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로,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을 “지방보훈청장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별표 비고 제6호아목(종전의 마목)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종전의 바목) 중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을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아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차.「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카.「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별표〉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 구분 | 시간주차<br>(1회 주차시 5분당) | 정기주차 |
|---|---|---|
| 1급지 | 400 | 60,000 |
| 2급지 | 250 | |
| 3급지 | 150 | |

※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시지가 변수” 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간주차“라 함은 1일 내 임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정기주차“라 함은 소속 직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서 정한 급지를 적용한다.
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차여건 등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시간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차여건, 기관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정기주차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7. 전체 주차면의 50% 이상은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br>1. ~ 7. (생 략)<br>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td><td>제1조(목적) ---------- 제139조에 따라 ---------- 필요----------.<br>제7조(사용 제한) ---------- 어느 하나----------.<br>1. ~ 7. (현행과 같음)<br>제9조(시행 규칙) ---------- 필요----------.</td></tr>
<tr><td><별표><br>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br>(단위 : 원-1구획당)</td><td><별표><br>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제4조 관련)<br>(단위 : 원-1구획당)</td></tr>
<tr><td>
<table>
<tr><th>구분</th><th>시간주차<br>(1회 주차시 5분당)</th><th>정기주차</th></tr>
<tr><td>1급지</td><td>400</td><td rowspan="5">60,000</td></tr>
<tr><td>2급지</td><td>250</td></tr>
<tr><td>3급지</td><td>150</td></tr>
<tr><td>4급지</td><td>100</td></tr>
<tr><td>5급지</td><td>50</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시간주차<br>(1회 주차시 5분당)</th><th>정기주차</th></tr>
<tr><td>1급지</td><td>400</td><td rowspan="3">60,000</td></tr>
<tr><td>2급지</td><td>250</td></tr>
<tr><td>3급지</td><td>150</td></tr>
</table>
</td></tr>
<tr><td><신 설><br><br><비고><br>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td><td>※ 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변수” 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br><br><비고><br>1. ----------.</td></tr>
</table>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정기주차 "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 ----------소속 직원에 ----------. |
| 3.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3. ---------- 30% 범위----------. |
| 6.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6. (현행과 같음) |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 |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상이자로서 ----------. |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 지방보훈청장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 |
| <신 설>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 <신 설>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80---------- |
| <신 설>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
| 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 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 <삭 제> |
| <신 설> |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 <신 설> | 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 아.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자 및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타. 그 밖에 ----------. |
| <신 설> | 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